

진정서

진정인 난민인권센터
 재단법인 동천

피해자 1. A
 2. B
 3. C
 4. D
 5. E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진정 취지

1.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의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며,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에 이른 경위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난민신청사유를 밝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과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난민신청사유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됩니다. 면접조서의 내용은 향후 난민 인정 여부 심사,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사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의 난민면접 과정을 살펴본 바, 특정 통역인(장OO)과 특정 공무원(조OO)이 참여하여 작성된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에 해당 난민신청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난민신청인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피해자들이 면접 당시 결코 하지도 않은 진술이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된 것입니다. 더욱이 질의응답 종료 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로 인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면접의 의의 및 공무원의 의무

가. 난민법상 규정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할 것과(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고(난민법 제 14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난민법에서 이와 같이 상세하게 난민면접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난민면접이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난민심사절차이며, 그 면접 결과는 난민인정 여부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난민인정절차의 핵심은 면접조사 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면접은 난민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한 조사와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나. 난민편람상 규정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난민편람』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유능한 통역 서비스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192항 (iv)}, 심사관은 “신청인이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200항), “심사관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관해 내린 결론 및 신청인에게 받은 주관적 인상 등이 신청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어지므로, 심사관은 이들 법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의 관념 및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라는 심사관의 개인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02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다. 공무원의 의무

결국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모든 진술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역인과 난민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편견이나 예단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난민신청서를 토대로 박해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청자의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에 배치되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그 진위를 밝혀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난민면접 업무는 난민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난민심사관이 아닌 난민심사관을 도와 난민면접 및 사실조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난민업무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난민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사할 의무를 위반하여 난민신청서와 배치되는 내용의 면접조서가 작성된 경우, 난민심사관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해 사례

가. 피해자 1, 2

1) 면접과정

피해자1과 피해자2는 [REDACTED] 한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각자 난민면접에 임했습니다. 이들이 자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와 그 번역본(참고자료1 피해자 1, 2의 난민신청서 및 번역본)에 의하면, 피해자1은 [REDACTED] [REDACTED] 박해의 가능성이 있어 난민을 신청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 2 모두 난민인정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민신청사유에 대한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 20분 정도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 난민면접조서

피해자1과 피해자2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난민면접조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참고자료 2 피해자 1, 2의

난민면접조서). 우선 피해자 1의 경우, 인적사항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1쪽). 본국에서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 1은 [REDACTED] 일했다고 설명하였으나, 난민면접조서에는 엉뚱하게도 피해자 1의 직업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3쪽).

무엇보다도, 난민면접의 핵심인 [박해사항]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1이 난민 면접 시 전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허위의 내용을 작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십시오.

답.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문.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이집트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

답.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2 피해자 1의 난민면접조서 4면]

피해자 2의 난민면접조서에도 위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REDACTED]

[REDACTED]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비상식적인 답변

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난민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해 온 정치적 활동과 그로 인하여 자국 정부로부터 받은 박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자가당착식 답변을 하였을 리 만무합니다.

3) 면접 종료 후 확인절차

면접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들은 스스로 면접조서 말미에 아랍어로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취지의 문장과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한글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들은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통역인이 난민면접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조서 내용을 전부 하나씩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만을 재확인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피진정인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의 수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난민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¹를 위반하는 절차적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¹ 난민법 제15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나. 피해자 3

1)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3은

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3의 경우에도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담당공무원과 통역인으로부터 난민면접을 받았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아보게 된 난민면접조서에는 ‘한국에 일을 하려고’ 왔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3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

문. 2015. 10.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중략)

문.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십시오.

답.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문. 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답.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

문. 신청인이 폭행과 욕설을 당한 일을 경찰에 신고했나요.

문.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

답.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3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 4-5면]

그러나 피해자 3이 법원에서 본인신문을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민 면접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난민신청사유를 말하려고 했을 때 [redacted] 있다고 말하였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참고자료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판결). 즉, 피해자 3의 난민면접조서에도 피해자 3이 난민면접시에 전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해당 부분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내용을 작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면접 종료 후 확인절차

또한 피해자 3은 난민면접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접 질문들이 매우 짧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통역인이 구사하는 아랍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물으니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말해주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면접을 마친 후 서명을 요구했고, 피해자 3이 “아직 설명을 안 해주어서 사인을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통역인이 서명을 하면 설명해주겠다고 해서 서명을 하였는데, 설명을 요구하였더니 시간이 다되어 어렵다고 설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측은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의 수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4

피해자 4은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REDACTED] 체포 등의 위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4도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담당공무원과 통역인으로부터 난민면접을 받았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아보게 된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하거나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5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 사유를 어떻게 알게 되고 적게 되었나요.

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민신청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연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 사유를 듣거나, 난민신청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문.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뜻 맞나요.

답. 네 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거짓 사연을 쓰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서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하여 와서 난민신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무슬림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문제나 위험, 위협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집트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형도 현재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도 한국에 불러 함께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귀국할 경우 신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나요.

답. 본국에 돌아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집트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문. 신청인은 소속되거나 활동한 단체가 있나요.

답. [REDACTED]

<중략>

문. 신청인이 지금까지 난민신청사유로 주장한 한국에서 취업 및 체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과 [REDACTED]

[REDACTED] 다른 난민신청 사유가 있나요.

답. 아니요, 그것 이외에 다른 난민신청 사유는 없습니다.

[참고자료5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 5-6면]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측은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난민신청자가 잘못 기록된 내용의 수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라. 피해자 5

피해자 5은 예멘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REDACTED]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5도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담당공무원과 통역인으로부터 난민면접을 받았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아보게 된 난민면접조서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법적인 체류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으며 ‘난민신청하기 위해서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지어서 작성’ 하였으며 본인이 박해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6 피해자 5의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5의 경우 이후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었고, 체류목적으로 난민신청했어요.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법적인 체류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이 난민신청 시에 테러조직(후티반군)의 위협을 받는다고 작성하였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난민신청하기 위해서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지어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겪은 박해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은 예멘에서 특별한 위협받은 사건이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문. 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 위협이나 박해받은 내용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신청인이 예멘으로 귀국 시에 박해나 위협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예멘으로 귀국해도 내전으로 위험한 상황일 뿐, 제가 특별히 위협이나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6 피해자 5의 난민면접조서 4면]

마. 그 외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한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총 몇 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인이 인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자 있는 난민면접조서를 전달받은 사례만해도 18건이나 됩니다. 공통적으로 난민면접조서 상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으로 왔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등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면접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난민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참고자료 7 18 건 난민면접조서 및 진술서).

또한

결국 앞서 본 사례들 외에도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일련의 난민면접에 배석한 통역인이 어떤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또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허위의 내용을 면접조서에 기재하였는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만일 면접조서가 통역인 또는 담당공무원의 심증에 따라 또는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하고, 진술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난민불인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범죄행위이거나 이에 가까운 행위에 해당합니다.

4. 법무부의 미온적 대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난민 관련 활동가 및 단체에서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면접조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면접조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 관련 단체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는 면접을 간이하게 한 것일 뿐이지 허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².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다룬 사례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일부 사건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난민신청서와 면접조서를 검토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다고는 하나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난민 관련 단체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공무원이 실시한 총 면접조사 및 심사결정통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각 심사관별 심사결정 통계, 각 심사관별 심사진행건수 및 심사종료건수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 심사관별

² 2017. 12. 26. 난민 관련 단체와 법무부 난민과 협의회의

심사결정 통계를 인정/불인정/인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공개함은 심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참고자료 9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결정자료).

이렇듯 법무부는 사안을 공론화 하고 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적절한 징계를 하기는커녕 판결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 일부 문제되는 사안만 직권취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어 재신청을 하였고, 동일한 사무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신청에 대해 다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선 최초 신청에 대한 면접조사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기초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이미 지득하고 있었음에도, 재신청에 대해 불인정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 신청 당시 면접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과 재신청 면접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고 있어, 피진정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는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참고자료 10 피해자 4의 난민재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서).

5. 피해자들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무부에서 그나마 직권취소를 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입니다. 해당 사건 법원은 면접조서 기재 내용이 “난민신청자가 실제 그렇게 진술하였다거나

답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들”이며 “그것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것이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난민면접과정에서 종전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배치되는 원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면, 난민심사관은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원고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을 뿐”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1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이후 법무부는 소송으로 다뤄지던 사건에서 대부분 직권취소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피해자 3의 사건에서 사증을 위조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 3이 ‘경제적 목적 이주민’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기각 되었으나,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신청을 한 사람 중에 위 2.나.2.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기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난민신청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유독 아랍어 통역인 장OO가 통역한 난민면접조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많다는 것은 아랍어 통역인 장OO의 통역 내용이나 통역 방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판결).

또한 위 판결에서는 “통역인 장OO가 참여하여 작성된 아랍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다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031, 2017구단3444, 2017구단4294, 2017

구단6993, 2017구단9152, 2017구단9350, 2017구단50396, 2017구단58710, 2017구단62429, 2017구단63293 사건 등)의 난민면접조서에서 유사한 기재 내용들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6.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가. 피해자 1, 2의 사례

피해자 1, 2의 경우 이집트에서 박해를 피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도망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REDACTED]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한 즉시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REDACTED]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면접실에서 각자 통역인 장OO의 아랍어 통역을 통해 조사관 조OO과 약 15~20분 가량 난민면접을 한 이후 [REDACTED]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 1, 2는 [REDACTED]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REDACTED]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REDACTED] 난민불인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REDACTED] 조정권고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REDACTED] .자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후 재면접 과정을 거쳐 [REDACTED]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결국 피해자 1, 2는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된 [redacted]부터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redacted] 난민신청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지내야 했으며, 더욱이 [redacted] 가족이 겪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나. 그 외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 1, 2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피해자들은 1년 반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거부됐는지 모른 채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살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자료 12 난민불인정사유서).

난민 불인정 사유서	
신청인 성명	
난민신청사유	체류 및 취업 목적

결과	불인정
	<p>신청인은 위협 등 박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진술한 점</p> <p>신청인은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박해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며, 본국에 귀국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난민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p> <p><중략></p>

[참고자료 12 피해자 4의 난민불인정사유서 기재내용]

최소 40명, 많게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정부의 주도 내지 방관 하에 소위 “가짜 난민”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소신 등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또는 전쟁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온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에 의해서 조장되었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긴 시간 난민신청자의 지위로서 겪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4의 경우 재신청을 하여 다시 제대로 심사를 받고자 하였음에도,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동일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최초 면접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재신청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또 다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0 피해자 4의 난민재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서). 이와 같은 피해를 피해자 4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한 상황 확인과 빠른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비단 장OO-조OO이 함께 담당하였던 사건뿐만 아니라 장OO가 다른 공무원과 진행한 사건 및 조OO이 다른 통역인과 진행한 사건까지 전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특정출입국사무소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난민면접절차에서 녹음 또는 녹화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인이 파악하기로는 해당 사건이 이루어진 면접에서는 일체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법 제8조 3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7.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법무부가 조장 내지 방관한 난민면접 절차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함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위와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피고,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의 수를 핑계로 졸속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의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과,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 참고자료 2 피해자 1,2의 난민면접조서
- 참고자료 3 피해자 3의 면접조서
- 참고자료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판결
- 참고자료 5 피해자 4의 난민면접조서
- 참고자료 6 피해자 5의 난민면접조서
- 참고자료 7 18건 난민면접조서 및 진술서
- 참고자료 8 [REDACTED]
- 참고자료 9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결정자료
- 참고자료 10 피해자 4의 난민재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서
- 참고자료 11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 참고자료 12 난민불인정사유서

국가인권위원회 귀중